



www.seoul.go.kr
제 3194호
2013. 9. 17.(화)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입법예고]

제2013-147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입법예고 2

제2013-148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입법예고 3

제2013-148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입법예고 3

제2013-1486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(안) 입법
예고 5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478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3년 9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(2013.6.21.)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익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

-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수익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(안 제 18조의2)
- 사용·대부료, 교환차금,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%로 인하 (안 제33조의2, 제36조의2, 제90조제3항, 제91조의2)

나. 수익매각 요건 중 시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“1989년 1월 24일 이전”에서 “2003년 12월 31일 이전”으로 완화함 (안 제3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자산관리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(전화: 2133-3277, FAX: 2133-1031, E-mail: rmsi69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481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9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한시기구인 ‘마곡사업추진단’과 ‘일자리기획단’의 설치 및 분장사항을 규정하고, 감사관·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서울도서관의 소관업무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

- 마곡사업추진단(3급기구) : 마곡도시개발사업 총괄
- 일자리기획단(3급기구) : 일자리 창출·사회적경제 육성 등

나.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업무 규정

다.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불편개선 업무 소관부서 조정

라. 서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

마.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분장사무 자구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2133-6725, FAX : 2133-0822, E-mail : coeur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482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

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9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, 한시기구인 ‘마곡사업추진단’ 및 ‘일자리기획단’ 설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무직렬로의 전직과 관련한 정원 조정사항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6,933명에서 16,935명으로 총 2명 증원함

가.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

– 기능직(사무) △76명 → 일반직(행정) +76명

나. 공무원 직종개편 전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

– 기능직(사무 외 직렬) △300명 → 기능직(사무) +300명

다.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 설치에 따른 증원

– 일반직 3급 +2명

라. 정원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직종별·직급별 정원의 일부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2133-6725, FAX : 2133-0822, E-mail : coeur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-1486호

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3년 9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나.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.
- 다.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함(안 제12조~제19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[참조 : 노동정책과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과(전화: 02)2133-5413, FAX : 02)2133-0709, E-mail : ddogang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※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

기관의 장

선
람

공
람
